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단식 중인 이주노동자 석방촉구 기자회견

기 자 회 견 순 서

사 회 ………… 정재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규탄발언 섹 알 마문 이주노조 수석부위원장

장창원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사 월 다산인권센터

질의 응답

기자회견문 낭독 김승섭 노동자연대 정지윤 수원이주민센터

일 시: 2016년 11월 1일(화) 오전 11시

장 소: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정문

주 최:경기이주공대위

1. 오먼 씨 사건경과보고

- 1976년 우즈베키스탄 출생 (현재 만39세)
- 2003년 4월 산업연수생(D-3)비자로 입국하여 경북 고령 소재 S금속에 입사하여 근무
 - 6월 기숙사에서 청소를 하며 식탁을 옮기던 중 유리가 깨져 오른쪽 눈을 다침. 두 차례 수술을 하였으나 결국 다친 눈은 실명 되었음 (이 과정에서 두 번 째 수술에 대해서는 본인동의도 받지 않았다고 함)
 - 7월 회사 복귀함. 금속가공업무가 금속파편이 눈으로 자꾸만 들어가서 힘든 까닭 에 플라스틱 가공 업무로 변경하여 1년 반 정도 근무
- 2005년 회사에서 갑자기 금속가공업무로 복귀시킴. 이 문제로 관리자와 계속 갈등이 있었음. 관리자와의 사소한 다툼을 이유로 회사에서 오먼 씨를 해고함. 그후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건설현장 등을 전전함.
- 2006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승인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었음. (바로 불복하지 않아 이 대로 확정)
- 2008년 1월 1차 단속되어 청주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었음. 눈치료 등을 이유로 보호일시 해제됨.
 - 2월 보호 해제 될 무렵 고향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음. 눈치료 등을 위해서 모아두었던 돈을 고향으로 보내고 가족들 부양을 위해 불법체류 상태에서 취업활동. 눈 치료와 장애보상 등 요구하기 위해 회사를 몇 차례 찾아갔으나 경찰을 부른다고 협박하여 도망침
- 2015년 8월 2차 단속되어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됨. 눈 치료와 장애보상금문제 해결을 위해 보호일시해제 4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거부 되었음
- 2016년 4월 단식시작
 - 7월 이주인권단체 <아시아의친구들>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 우연히 알게되어 이후 정기적으로 면회
 - 9월 경기이주공대위에서 화성보호소측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오먼 씨건 논의
 - 10월 19일 면회 때 물도 먹지 않겠다는 의사 밝힘
 - 10월 25일 오먼 씨 보호실 내에서 자살 시도. 보호실 내에 다른 외국인들에 의해 발견되었고 의료진 왔으나 외부후송 하지 않고 간단한 검진과 주사처방만 하고 돌아감. 오먼 씨는 4시간 가량 정상적인 의식 찾지 못함
 - 10월 26일 <아시아의친구들>에서 오먼 씨 면회함. 목 주위에 붉은 자욱 남아 있었고 자살하겠다는 말을 반복하였음

2. 기자회견문

사람이 죽어간다. 오먼 씨를 석방하라!

지난 10월25일 오후2시경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 중이던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주노동 자 오먼(39)씨가 목을 매 자살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다행히 다른 보호외국인이 비교적 빨리 발견하여 제지하는 바람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4시간 가량 정상적인 의 식을 찾지 못하고 누워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화성외국인보호소 측은 의사가 간단한 검진 과 주사처방만 시행한 후 오먼 씨를 그대로 방치해놓았다. 뇌나 다른 장기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외부병원으로 이송하여 정밀 진단하는 등의 후속조치는 없었다.

오먼 씨는 이미 지난 4월 경 부터 단식과 절식을 오가며 보호소 측에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해왔던 사람이다. 그 결과 보호소에 들어오기 전 105kg이 넘는 건장한 체구였던 오먼 씨는 현재 60kg까지 몸무게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워 휠체어에 의지해야 이동할 수 있는 상태이다.

오먼 씨는 사건이 있기 사흘 전부터는 물조차 마시지 않는 극한 단식을 진행해왔다.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이미 충분한 상태 이었음에도, 오먼 씨의 말에 따르면 보호소측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오먼 씨는 지난 2003년에 산업연수생으로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경북 고령의 한 금속가공업체에서 일을 하던 이주노동자이다. 코리안드림을 안고 부푼 마음으로 들어온 한국생활이었지만 입사한지 한 달여 만에 회사 기숙사에서 일어난 불의의 사고로 한쪽 눈을 실명하게 되었다. 회사는 두 차례의 수술을 해주긴 하였지만 그것이 끝이었다. 수술 후 회사로 복귀 하여 처음에는 금속파편이 튀지 않는 다른 업무로 전환 되었지만 일 년후 다시 금속가공업무로 보내졌다. 그 문제로 갈등을 빚다 오먼 씨는 결국 회사에서 해고되었다.

한쪽 눈이 안 보이는 오먼 씨가 다른 곳에서 직장을 구하기는 쉽지 않았다. 건설현장 등을 전전하던 그는 2008년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산업재해보상신청을 해보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연관성이 없다며 산재승인을 거부하였다.

그 후에도 오먼 씨는 몇 차례 회사를 찾아가 조금의 보상이라도 받고자 했으나 이미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된 오먼 씨에게 회사는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협박으로 그를 쫓아냈을 뿐이 다.

오먼 씨는 한국에서 다친 눈이고 고향 우즈벡에서는 의료기술이 높지 않으므로 한국에서 수술해서 회복하고 싶어 한다. 수술이 어렵다면 고향에 돌아가서 장애인으로 살게 되더라 도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보상금을 받고 싶어 한다. 물론 오먼 씨가 회사나 정부를 상대로 법적인 권리를 요구할 수는 없는 상태이다. 이미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후

이고, 제소기간이 만료되었다. 오먼 씨는 마지막으로 회사 사업주의 인간적인 선처에 기대를 걸고 있다.

우리는 오먼 씨의 기대가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하지만 오먼 씨를 소위 '보호'하고 있다는 한국정부에게 묻고 싶다. 당신들은 오먼 씨를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있는가? 생명이 점점 사그라들어가고 있는 오먼 씨를 붙잡아 놓고 무엇을 보호해주고 있다는 것인가? 그리고 오먼 씨를 이대로 강제추방해서 얻을 수 있는 당신들이 말하는 '국가이익'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오먼 씨 같은 억울한 피해자들이 해외에서점점 늘어나는 것이 '국익'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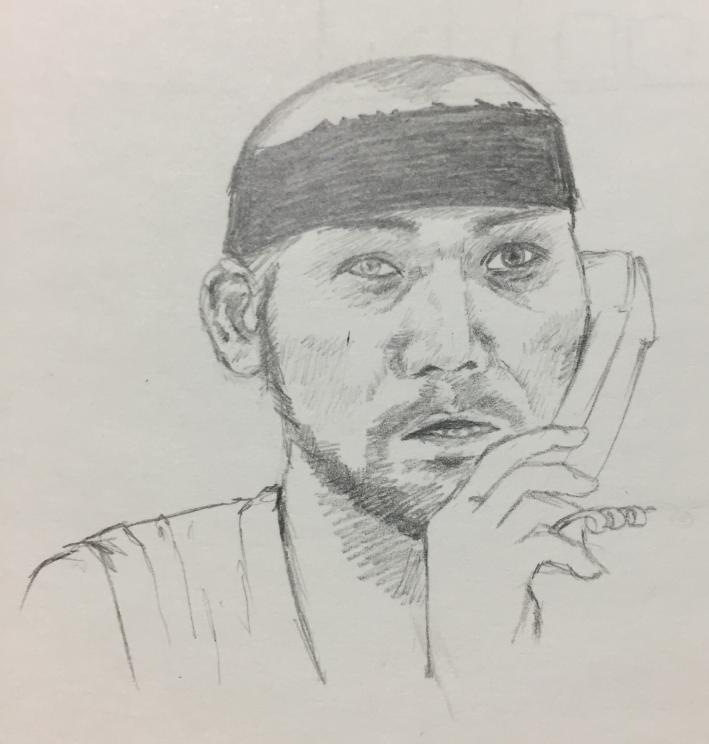
인권은 법적권리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법이 있기 전에 인간이 있다. 회사의 기숙사를 청소하는 것이 개인이익을 위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13년 전 일어난 그 사고로 한 젊은이 가 시력을 잃고 일자리도 잃게 되었다. 그리고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상태로 이제 강제 추방을 앞두고 있다. 그가 비록 외국인이지만 한국에서 얻게 된 이런 모든 불행 들을 그와 그가 태어난 나라의 사회에게 오롯이 책임지우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일까? 법무부와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 사람이 죽어간다, 오먼 씨를 즉각 석방하라!
- 인권침해 피해자의 호소를 묵살해온 수원출입국 규탄한다!
- 보호 없는 외국인보호소 법무부를 규탄한다!
- 눈 실명도 억울한데 강제추방 웬 말이냐?
- 불법체류단속이 사람 목숨보다 소중한가?
- 남의 눈에 눈물내면 제 눈에는 피눈물난다!
- 인간사냥 이주민단속추방 중단하라!
- 보호 없는 외국인보호소 당장 폐쇄하라!

2016년 11월 1일

경기이주공대위 및 기자회견참석자 일동

Free 9 !!



사람이 죽어간다...

외국인'보호소'의 인권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7년 여수참사로 28명이 죽거나 다쳤다. 2012년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몽골 이주노동자가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 2013년 화성외국인보호소는 구금된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가 심장질환, 우울증으로 인한 발작을 일으킴에도 이주민 지원 단체들의 항의를 받은 후에야 외래진료를 허용하기도 했다. 그래서 2015년 대한변협은 '외국인보호소는 구치소·교도소와 동일한 구금시설이다, 여러 측면에서 수형자보다 처우가 열악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오먼 씨는 2003년에 산업연수제로 한국 왔다. 그 직후인 2003년 7월에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다음해 시행했다. 그러나 2007년까지 산업연수제는 존속됐다. 또한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서 미등록체류자들을 합법화하기는커녕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오먼 씨가 미등록에서 벗어나지 못한 배경이다. 한편, 오먼 씨가 미등록으로 전락한 과정은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제한하고 체류자격이 고용주 손에 달려있는 고용허가제 아래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고통과 유사하다. 그래서 이주노동자들은 처음부터 고용허가제를 반대했다. 정부는 이런 끔찍한 제도를 유지하려고 단속추방의 공포를 이용해왔다. 즉,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하기 위해 시행한 정부정책 때문에 오먼 씨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다.